#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11

발의연월일: 2021. 7. 14.

발 의 자: 안민석 · 김의겸 · 김정호

도종환 • 문진석 • 박성준

백혜련 • 이성만 • 전혜숙

한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외문화재재단의 소요경비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고 있음.

우리나라 문화재는 전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음.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가 담긴 국외문화재를 적극 환수하여 자주국가의 기상을 떨치고, 미래세대에게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 시켜야 함.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존·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외의 다

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 특히 긴급한 경매 등을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는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부금과 같은 재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 규정이 없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이 기부금 접수를 할수 없음.

따라서 현행법에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문화재의 환수·보존·활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 법률 제 호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 ⑨ 국외문화재재단은 제8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⑩ 국외문화재재단은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① ~ ⑦ (생 략)	설립) ① ~ ⑦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⑧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
	단에 기부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⑨ 국외문화재재단은 제8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
	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
	품을 접수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⑩ 국외문화재재단은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u>상황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u>
	<u>고하여야 한다.</u>
<u>&lt;신 설&gt;</u>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
	재의 환수・활용에 현저한 공
	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 시
	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
	<u>다.</u>